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장순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28호로 2021년 12월 8일 장순원·정선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사항 반영 (안 제19조)
- 나. 의안의 제출·발의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 개정 (안 제31조)
- 라. 그 밖의 인용조문 정비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3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12. 1. ~ 12. 5./5일 간)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21.1.1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전부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는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례회의 집회일, 운영 등을 법률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되어 안 제19조제1항에 정례회의 개최 및 회기, 임시회의 소집요건을 규정하고,
- 안 제19조의2는 의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 제 66조에 따라 의안 발의 정족수를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에서 규정했으나, 개정 법에서 발의 정족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보임.

현 행 법	개 정 법
<p>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p> <p>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제53조(정례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제45조(임시회) ① 생략</p>	<p>제54조(임시회)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p>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 ⑤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②현행과 같음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 ⑤ 생략

- 안 제31조는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에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한 바,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31조제4항을 삭제함으로써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현행법에서는 임의사항이었으나 의무화되고, 사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p>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u>특정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u> 두 가지로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p> <p>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u>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u></p>	<p>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u>특정한 사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u> <p>③ 현행과 같음</p> <p>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u>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u></p>

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의안발의 정족수 규정,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